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윤영석 · 이상휘 · 백종현
서천호 · 박성민 · 박덕흠
정동만 · 조경태 · 김미애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를 위하여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 노출되어,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(의증)이 발생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 · 거동불편 등으로 돌봄 · 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은 “양로시설”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. 특히, 양로시설은 주거 · 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, 요양시설은 장기요양 · 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.

이에 지원의 범위를 “양로지원”에서 “양로 · 요양지원”으로 정비하고, 지원 장소도 “양로시설”에서 “양로 · 요양시설”로 명확히 하여 대

상자의 건강·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제8조의2).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의 제목 “(양로지원)”을 “(양로·요양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양로시설”을 “양로·요양시설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양로지원을”을 “양로·요양지원을”로, “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”를 “양로·요양시설 외의 양로·요양시설에”로 한다.

이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·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